

소송비용액 지급 요청서

이 우편물은 2023-12-04
제 3112918054574호에 의하여
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
서울법원첨사우체국장

대한민국 KOREA

발 신 :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행복한교회
서울 관악구 양지길 40-4(신림동)
대표자 담임목사 장동선

수 신 : 서울특별시
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
대표자 시장 오세훈

참 조 : 세제과 세무서송팀 주무관 조아란

제 목 : 소송비용액 지급요청 건

1. 귀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발신인이 귀시에 2023. 10. 12. 신청한 소송비용액 지급요청서는 2023. 12. 1. 현재까지 귀시가 소송비용액을 변제치 않았는바, 발신인이 귀시에 2023. 10. 12. 신청한 소송비용액 지급요청서는 본 소송비용액 지급요청 건을 귀시가 송달받는 즉시 무효임을 알려드리며, 귀시의 계속된 지급불응에 따라 그 지체책임을 귀시에서 진다 할 것이므로 민사상 법정이율 연 5%의 지연이자를 추가하여 청구함을 알려 드립니다.
3. 대법원 2008. 7. 10. 선고 2008다10051 판결에 의하면, "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상환의무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고 채무자가 그 이행기를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"라고 판시하였습니다.
따라서 채무자가 그 이행기를 안 때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확정일을 말하며,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카확35232호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의 확정일은 2023. 9. 14. 인바, 확정일 다음날인 2023. 9. 15.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사상 법정이율 연 5%의 지연이자를 청구합니다(첨부된 확정증명원 참조).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카확35232호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에 대한 집행력 있는 결정 정본에 터 잡아, 소송비용액 지급요청을 아래와 같이 신청하오니, 조속히 소송비

용액 원금 24,234,221원 및 2023. 9. 15.부터 귀사가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지연 이자를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행복한교회의 예금계좌인 아래 송금 받을 통장으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- 1. 소송비용액 : 채무자 서울특별시 원금 24,234,221원 및 지연이자(2023. 9. 15.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사상 법정이율 연 5%의 지연이자)
- 1. 송금 받을 통장 : MG새마을금고, 계좌번호 - 9002-1911-7593-4, 예금주 -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행복한교회

첨부서류

- 1. 2023카확35232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 1부
- 2. 확정증명원 1부
- 3. 원고명의 통장사본 1부
- 4. 고유번호증 1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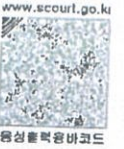
2023. 12. 1.

신청인(채권자)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행복한교회
서울 관악구 양지길 40-4(신림동)
대표자 담임목사 장동선



서울특별시

귀 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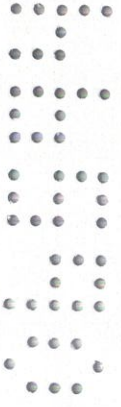
서울중앙지방법원

결 정

사 건 2023카합35232 소송비용액확정

신 청 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행복한교회
 서울 관악구 양지길 40-4 (신림동)
 대표자 담임목사 장동선
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맥 담당변호사 류경환

피 신 청 인 서울특별시
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
 대표자 시장 오세훈



주 문

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2021가합588770, 서울고등법원 2022나2043680 부당이득금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금 24,234,221원임을 확정한다.

이 유

주문 기재의 위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별 지 계산서와 같이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

※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.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(번호)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,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

위변조 방지용 바코드입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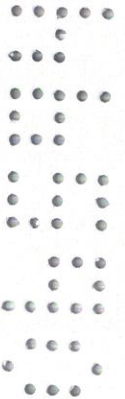
www.ecourt.go.kr
문서 추적용 바코드

한다.

2023. 8. 30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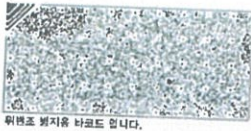
사법보좌관

윤현숙



※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.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(번호)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,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2023-0248104672-5DDF0



【별지】

소송비용계산서

2023카합35232

신청인 : 원고 (2021가합588770, 서울고등법원 2022나2043680)

제1심 소가 : 251,515,380원, 제2심 소가 : 251,515,380원

부담재판 : 소송 총비용 피고(100%)

1. 소송 총비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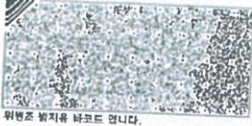
(단위 : 원)

심급	비목	비용액	비고
1심	변호사보수 1)	10,915,153	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 산정하면 $10,400,000 + (251,515,380 - 200,000,000) \times 0.01$
	인지대	954,900	$(251,515,380 \times 0.004 + 55,000) \times 0.9$ (전자)
	송달료	9,962	실제 지출비용 산입(환급액 68,038 제외)
소계		11,880,015	
2심	변호사보수	10,915,153	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 산정하면 $10,400,000 + (251,515,380 - 200,000,000) \times 0.01$
	인지대	1,432,300	$((251,515,380 \times 0.004 + 55,000) \times 1.5) \times 0.9$ (전자)
	송달료	400	실제 지출비용 산입(환급액 62,077 제외)
소계		12,347,853	
본안비용소계		24,227,868	1심 11,880,015 + 2심 12,347,853
소송비용 확정신청	인지대	900	
	송달료	5,453	기발생 5,419 + 모바일단문메시지 34 (잔액은 확정 후 등록된 환급계좌로 자동 환급됨)
신청비용소계		6,353	
합계		24,234,221	본안비용 24,227,868 + 신청비용 6,353

2.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 금 24,234,221원

1) 변호사보수액은 대법원규칙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과 실제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소송비용으로 인정함(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, 변호사보수산입규칙 제3조 제1항).

※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.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(번호)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,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

정본입니다.

2023.09.04

서울중앙지방법원

법원주사보 이희진



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(발송송달의 경우에는 발송한 날)부터 7일 이내에 항고장을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원심법원인 이 법원(서울중앙지방법원)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※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.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(번호)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, 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

확정증명원

사 건 :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카합35232 [전자]소송비용액확정

신 청 인 :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행복한교회

피 신 청 인 : 서울특별시

증명신청인 :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맥,류경환

위 사건에 관하여 2023. 9. 14. 자로 확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. 끝.

2023. 12. 1.

서울중앙지방법원

법원주사 송명환



인터넷 제증명 시스템을 통하여 자동 발급되었습니다.

본 증명(문서번호:전자제출제증명(민사신청) 4848623)에 관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02-3480-17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.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(번호)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,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고객의 소중한 꿈을 만들어 가는 좋은 이웃 새마을금고

대한예수교장로회서울행복한교회

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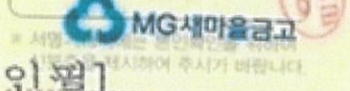


예금종목 온라인보통예탁금
계좌번호 9002-1911-7593-4



[실명확인필]

가입하신금고 동안 031)422 -2700
통장발행금고 동안 031)422 -2700
발행일자 2019-09-18 신규발행
등록No.30-02(140 x 172)



대한민국정부
인지세100원
삼성세무서장
후납승인14년7호

(이 통장은 표지를 합하여 12장입니다.)

특기사항

통장발행횟수 01
계좌개설일자 2019-09-18

e-뱅킹서비스

- 인터넷뱅킹 www.kfcc.co.kr
- 텔레뱅킹 ☎1599-9000 / 1588-8801
- 스마트뱅킹
인터넷뱅킹 가입 → 어플리케이션 설치

통장·카드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행위는 불법입니다! 타인에게 통장을 매매·양도하면 법적처벌을 받게 됩니다.
(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)

예금자보호 안내

이 예금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본 새마을금고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"최고 5천만원까지" 새마을금고중앙회 예금자보호준비금에 의해 보호되며, 5천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보호되지 않습니다.

- 소정의 이저란 예금자보호준비금위원회가 정하는 이자를 말합니다.
- 위 내용은 새마을금고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, 자세한 내용은 해당 새마을금고 또는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준비금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☎ 02) 2145-9114 / www.kfcc.co.kr)



고유번호증

(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)

고유번호 : 112-89-01966

단체명 : 대한예수교장로회서울행복한교회

대표자성명 : 장동선

생년월일 : 1963년 09월 21일

소재지 : 서울특별시 관악구 양지길 40-4(신림동)

발급사유 : 정정(소재지)



(유의사항)

- (1) 이 고유번호증의 부여로 인해 민법 기타 특별법에 의한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.
- (2)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 및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, 미이행 시 가산세 등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2015년 03월 18일

금천세무서장

